

2021년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고

2021년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9일 특허청장

1. 대회 개요

■ 목적

- 대학의 특허 데이터 활용 · 분석교육 확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

■ 경쟁 부문

○ 발명사업화 부문

- 기업·연구소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에 관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제품 아이디어와 디자인·경영전략 등 발명사업화 기반의 비즈니스 전략 수립

○ 특허전략 수립 부문

- 기업·연구소 등의 기술주제에 대해 국내외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R&D전략 제시 및 특허획득 방향 수립

※ 부문별 문제는 대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참가 자격

- 국내 대학(원)생으로 개인 또는 팀*(3명 이내) 지도교수 1인(복수팀 지도 가능) 구성

* 다양한 전공 학생들 간에 팀 구성을 권장

※ 경쟁 부문 복수 신청 가능

2. 발명사업화 부문

■ 목적

- 대학(원)생이 기업·연구소 등의 보유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식재산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

■ 추진 기관

- 주 최 : 특허청
- 주 관 : 한국공학한림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후원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화학공학회, 대한금속·재료학회, 대한기계학회, 중소기업중앙회
- 참여기관 : 삼성전자(주), 현대자동차(주), LG디스플레이(주), SK하이닉스(주), 삼성SDI(주), 삼성디스플레이(주), (주)유니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 심사 절차

- 기초심사 → 서면심사 → 발표심사 → 최종심사 → 통합 최종심사

심사단계	일정	심사 내용
기초심사	8.16.(월) ~ 8.18.(수)	신청 자격, 제출서류, 답안 유효성
서면심사	8.20.(금) ~ 8.31.(화)	관련 특허기술 이해도, 비즈니스 전략의 적절성 등
발표심사	9.27.(월) ~ 9.30.(목)	활용 아이디어·비즈니스 전략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사업성 등
최종심사	10.19.(화)	특허분석 우수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
통합 최종심사	~ 10.28.(목)	서면·발표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국민참여 심사 일부 포함

■ 주요 일정(안)

- 참가 신청서 접수 : 2021. 4. 19.(월) ~ 6. 7.(월) 18시까지
- 답안·사업계획서 제출 : 2021. 8. 12.(목) 18시까지
- ※ 사전 온라인 교육(4.26.~6.1.), 답안작성 교육(7.5.~7.16.), 컨설팅교육(7.12.~23) 예정
- 최종 결과 및 수상자 발표 : 2021. 11. 1.(월) 예정
- 시상식 : 2021. 11. 24.(수) 예정

※ 세부 일정은 [붙임1] 참고

3. 특허전략 부문

■ 목적

- 대학(원)생이 기업·연구소의 기술 주제에 대하여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R&D 전략 및 특허획득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지식재산에 대한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계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급

■ 추진 기관

- 주 최 : 특허청
- 주 관 : 한국공학한림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후원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화학공학회, 대한금속·재료학회, 대한기계학회, 중소기업중앙회
- 참여기관 : 삼성전자(주), 한미약품(주), 현대자동차(주), 롯데케미칼(주), (주)LG화학, LG디스플레이(주), 삼성SDI(주), LS일렉트릭(주), 삼성디스플레이(주), 삼성전기(주), SK하이닉스(주), (주)포스코, 서울반도체(주), 두산인프라코어(주), SK실트론(주), 현대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삼성중공업(주), 현대제철(주), 현대삼호중공업(주), (주)현대미포조선, (주)한진중공업, 대선조선(주), (주)유니크, 고려아연(주),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심사 절차 및 기준

- 기초심사 → 서면심사 → 발표심사 → 최종심사 → 통합 최종심사

심사단계	일정	심사 내용
기초심사	8.16.(월) ~ 8.18.(수)	신청 자격, 제출서류, 답안 유효성
서면심사	8.20.(금) ~ 8.31.(화)	선행특허 조사·분석, 핵심특허분석, 특허전략 수립의 타당성 등
발표심사	9.29.(수) ~ 10.7.(목)	이해력, 분석력, 표현력, 발표력 등
최종심사	10.19.(화)	특허검색·분석·전략설계의 적정성, 문제해결도, 실무적용가능성 등
통합 최종심사	~ 10.28.(목)	서면·발표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국민참여 심사 일부 포함

■ 주요 일정(안)

- 참가 신청서 접수 : 2021. 4. 19.(월) ~ 6. 7.(월) 18시까지
- 답안·사업계획서 제출 : 2021. 8. 12.(목) 18시까지
※ 사전 온라인 교육(4.26.~6.1.), 답안작성 교육(7.5.~7.16.), 컨설팅교육(7.12.~23) 예정
- 최종 결과 및 수상자 발표 : 2021. 11. 1.(월) 예정
- 시상식 : 2021. 11. 24.(수) 예정
※ 세부 일정은 [붙임1] 참고

4. 시상 내역

구 분	발명사업화 부문	특허전략 부문
대통령상	1팀 (1,500만원)	
국무총리상	1팀 (1,2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1팀 (1,000만원)	1팀 (1,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1팀 (1,000만원)	1팀 (1,000만원)
특허청장상	1팀 (1,000만원)	1팀 (1,000만원)
한국공학한림원회장상	1팀 (1,000만원)	1팀 (1,000만원)
한국발명진흥회장상	1팀 (1,000만원)	1팀 (1,000만원)
후원기관장/CEO상	(우수) 문제당 1팀 (각 300만원)	(우수)문제당 1팀 (각 300만원)
	(장려) 문제당 2팀 (각 100만원)	(장려)문제당 2팀 (각 100만원)
지도교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명, 특허청장상 2명 한국공학한림원회장상 2명,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2명 한국발명진흥회장상 4명 (각 100만원)	
최다수상대학상	1개 대학(200만원)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장상)	
최다응모대학상	1개 대학(200만원) (한국발명진흥회장상)	

- * 후원기관장/CEO상 : 시상팀 수 등은 후원모집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 지도교수상 : 대통령상, 장관상 등 상위상 수상팀의 지도교수에 대하여 시상
- * 최다수상대학상(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장상) 선정기준

(각 부문별 수상팀 수의 가중치 합계)

- * (상위상 수상팀수 × 6.0) + (우수상 수상팀수 × 3.0) + (장려상 수상팀수 × 1.0)
- * 상위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특허청장상, 한국공학한림원회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 * 최다응모대학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선정기준

(부문별 논문 등 결과물 제출팀 수의 합계)

- * 기초심사에서 실격처리된 건은 제출 실적에 미반영

- ※ 정부포상(대통령·국무총리상) 후보자 추천 시 세금체납 조회와 관련하여,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1원이라도 체납이 있을 경우) 추천이 불가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활용,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음)

5. 접수방법 · 특전 및 유의 사항

■ 온라인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1. 4. 19.(월) ~ 6. 7.(월) 18시까지
- 대회 홈페이지(www.kipa.org/cpu)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부문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PDF, JPG파일) 업로드
 - ※ 제출서류: 재학증명서(재적증명서), 지도교수 확인서
 - ※ 각 부문 팀 참여 신청 등록 시, 팀원 각자의 개인인증을 통한 접수 필수
- 답안 제출 형식
 - (발명사업화 부문) '한글', 'MS-WORD', 'PPT' 형식(온라인 제출)
 - (특허전략 부문) '한글', 'MS-WORD' 형식(온라인 제출)
 - ※ 발표심사 시, 서면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추가로 PPT형식의 발표자료 제출

■ 참가자 및 수상자 특전

- 대회 참가자 대상 특허 검색·분석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 기회 부여
 - (온라인 교육) 대회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메뉴' 확인
 - (오프라인 교육) 대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 COVID-19 확산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교육 중 일부에 대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교육 진행 예정
- 수상자 취업 인센티브 제공(취업 우대 기관)
 - ※ 상세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 "취업지원 서비스" 메뉴 참조
- 수상자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관리
 - 수상자 대상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YIPL : Young Intellectual Property Leaders)'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 지식재산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 주요활동 : CEO 초청 강연 등 세미나, 산업체 및 연구소 현장 방문, 우수 수상사례 발표, 체육대회 및 소모임 운영 등 지원

■ 유의사항

- 참가자는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응모 아이디어의 권리귀속 관계 원칙 등([붙임2] 참조)에 동의하여야 함
- 본인의 발명(또는 고안)이 아니거나 공지 또는 실시된 발명(또는 고안)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상 불가 및 취소
- 국·내외 유사대회에서 수상한 동일·유사 작품은 출품 불가 및 수상될 경우 추후 취소 가능
- 대회 출품 전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은 본인의 발명 또는 고안이라 하더라도 수상 불가능
- 대회 참여 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자 저작물로 인정
 - ※ 단, 참가 문제로 진행한 결과물로 사후에 사업화 창업 등 활용 시, 관련 후원기업과 진행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한 확인절차와 합의를 거친 결과물만 실시 가능
- 참여자의 결과물(미수상작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 아이디어 거래의 우선협상자가 됨(결과발표일로부터 4개월간)
- 권리관계 분쟁 발생시, 대회 주최기관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 단, 대회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후에는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야함
- 본 대회는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2013, 특허청) 약관 등을 준수함
- 이 공고는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 FAQ 또는 Q&A 참조
- 문의 : (전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02-3459-2813)
(온라인) 대회 홈페이지 질의응답게시판 및 cpu@kipa.org

구 분	세부 내용	일 자
공통 일정	대회공고	4. 19(월)
	참가 신청서 접수	4. 19(월) ~ 6. 7(월) (18시까지)
	컨설팅 교육	7. 12(월) ~ 7. 23(금)
발명사업화 부문	문제공고 및 신청접수	4. 19(월) ~ 6. 7(월) (18시까지)
	사전교육	4. 26(월) ~ 6. 1(화)
	답안작성 교육	7. 5(월) ~ 7. 16(금)
	답안 및 사업계획서 제출	4. 19(목) ~ 8. 12(목) (18시까지)
	기초심사	8. 16(월) ~ 8. 18(수)
	서면심사	8. 20(금) ~ 8. 31(화)
	서면심사 결과발표	9. 2(목)
	발표심사	9. 27(월) ~ 9. 30(목)
	최종심사	10. 19(화)
특허전략 부문	문제공고 및 신청접수	4. 19(월) ~ 6. 7(월) (18시까지)
	사전교육	4. 26(월) ~ 6. 1(화)
	답안작성 교육	7. 5(월) ~ 7. 16(금)
	답안 제출	4. 19(목) ~ 8. 12(목) (18시까지)
	기초심사	8. 16(월) ~ 8. 18(수)
	서면심사	8. 20(금) ~ 8. 31(화)
	서면심사 결과발표	9. 2(목)
	발표심사	9. 29(수) ~ 10. 7(목)
	최종심사	10. 19(화)
통합 최종심사		10월 28일(목)
결과 및 수상자 발표		11월 1일(월)
시상식		11월 24일(수)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대회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서면·발표심사(후원기관장상 선정) → 최종심사(상위상 선정) → 통합 최종심사(대통령·국무총리상 선정)

□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귀속

- (1) 본 대회에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원칙적으로 출제된 특허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특허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한하여 제안자에게 귀속된다.

○ 본 대회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모방 혹은 표절로 밝혀질 경우, 해당 제안자에 대한 유·무상 형태의 관련 지원을 중단 및 즉시 회수한다. 법적 책임은 표절 당사자에게 있다.

- (2) 본 대회는 주최기관의 책임 하에 기업이 권리로써 보유한 특허를 문제로 제시하고, 주관기관은 아이디어의 구현 및 개선·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므로, 응모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 주최기관 및 주관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 소유 등 소유권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안된 아이디어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순이익은 주최기관, 제안자, 주관기관 등이 합의된 일정 비율로 분배하며, 이익의 취득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아이디어 제안자의 원래 아이디어 및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 아이디어 제안자가 응모한 아이디어는 공개 기술^{*}에 해당하므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감안하여 출원 등의 권리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아이디어의 제출만으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며, 추후 제안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등록을 통해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시연·발표, 안내책자·리플렛·작품집 배포, 박람회·전시회 전시 등을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에 해당된다.
- 아이디어가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공공의 소유가 되어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
- 이 점을 유념하여 추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한다.

* 특허·실용신안 : 12개월, 디자인 : 6개월

□ 응모 아이디어의 도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 (1)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는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주최·주관기관은 공모전 참가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 (2) 본 대회에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대회 참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교육·홍보·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한 추천·공개검증 등을 위해 공개하거나 공유하며, 제3자에 의한 권리의 실시 등은 제한한다.

-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 ②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 ③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

*공모전 응모 시 ‘참가신청서’, 수상 아이디어 결정 전후 ‘개별 협상’ 등을 통해 제안자의 동의 획득

- (3) 아이디어는 전자적 방식에 의해 제출되고 대회의 목적에 의거 공개를 전제로 하나, 공개 전 응모 철회 또는 자료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자료 반환 등의 절차 없이, 제출 자료에 대한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 (4) 특허청 및 주최기관은 응모된 아이디어는 공모전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한다. 다만, 공모전 수상작은 자료보존,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해 일정기간(최대 5년)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안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 (1)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화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아이디어의 기반이 된 특허를 보유한 후원기업 등은 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하여, 「통상실시권」 및/또는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협상권”이라 한다)」를 허여할 수 있다. 다만,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에 대한 반대급부가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3자가 선의로 제시하거나 또는 특허권의 보유 기업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인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참고사례) 「발명진흥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기업의 직무발명 승계여부 통지기간을 종업원의 직무발명 신고일로부터 4개월로 규정

- (2) 제안된 아이디어가 독립적인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원기업 등은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해당 아이디어를 매입하기 위한 우선협상권을 갖는다. 다만, 아이디어 제안자가 해당 아이디어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우선협상권 행사에 관한 합리적인 대가는 주최·주관기관의 중재 하에 권리관계 쌍방 간의 협의로 정한다. 다만, 후원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주최·주관기관 이외에 쌍방이 합의하여 선정한 기관이 평가한 가치를 합리적인 대가로 정한다.
- (4) 미수상자를 포함하여 대회 참가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 등에 활용할 경우, 기업이 학생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내용의 기술 내지 영업 비밀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분쟁해결 및 손해배상 관련

- (1)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주최·주관기관은 분쟁 당사자와 우선적으로 대화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2) 주최·주관기관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주최·주관기관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본 공모전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